대한비과학회 홍보위원회 규정

2006. 9. 8. 초안
2006. 10. 13. 보안
2011. 3. 13. 제정
2014. 3. 9. 개정

제1조(명칭) 본 회는 대한비과학회 홍보위원회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회는 대한비과학회가 주관하는 업무를 홍보하고 홈페이지, 학회 소식지(웹진) 및 관련 행사를 주관하여 학회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1. 학회주관사업의 회원 및 대국민 홍보
2. 학회차원의 회원 및 대국민 봉사
3. 학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의 관리 및 유지
4. (삭제) <2014.3.9>
5. 기타 홍보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항 수행

제4조(구성) ① 본 회는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홍보이사가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② 홍보이사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학회에서 주관하는 홍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③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.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본 회는 정기회의, 확대회의,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
② 정기회의는 위원이 참석대상이며 매 4 개월마다 개최한다.
③ 확대회의는 위원장과 회장, 자문위원이 참석대상이며 위원장과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.
④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최한다.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위임시에는 서신이나 위임위원의 결의도 인정된다.
⑥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상임 이사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6조(재정) 본 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에서 부담한다.

제7조(기타)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대한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.
②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